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

부과대상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소속 및 직급			
	주소			
신분보장등조치 결정	위원회 결정번호		이행기한	
의견제출 내용				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6 제1항에 따라 귀 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함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인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